



선박 통로에서 홀드바닥으로 추락

부두 선석에 접안 중인 선박 내에서 피해자가 1번 홀드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엔진 고정작업 상황을 확인 후 2번 홀드의 트윈데크(중간갑판)를 통해서 상부갑판으로 이동하기 위해 통로를 걸어가던 중 실족하여 홀드바닥(높이 7m)으로 추락하여 사망



발생 원인

- 추락 방지조치 미 실시
 - 선박 내 트윈데크(중간갑판)의 통로는 근로자 통행 시 추락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지조치 미 실시

TIP

안전작업

- 1 추락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**
 - 선박 내 트윈데크 통로는 화물라싱(lashing) 작업, 청소 또는 점검 등을 위한 근로자 통행 시 홀드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
- 2 개인보호구 착용**
 -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추락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(안전대, 안전모 등)를 반드시 착용



안전통로 확보



안전 난간대 설치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선박 통로에서 홀드바닥으로 추락

추락위험이 있는 통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세요!

